

※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천 르센토 데시앙"의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예비당첨자는 전체 세대수의 500%(5배수)를 선정하며, 정당당첨자의 부적격판정 및 계약 포기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예비당첨자 전체가 방문 서류접수 진행 시 다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추첨 기회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순위 예비순번 고객님들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선순위 예비순번 고객님들을 잔여세대의 1.5배수 범위에서 "우선 서류접수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접수를 先 진행**하고자 합니다.

■ 서류접수는 당첨자 본인(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서류접수 시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하고 추후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시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단순 제출만 받으며** 추후 검수가 완료되면 유선으로 별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중 "우선 서류접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예비당첨자 방문 서류접수를 진행하였다더라도 타입별 잔여세대에 따라 **추첨 참가 기회가 없을 수 있으며, 부적격 세대 발생 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서류검수의 적격심사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당첨자만 동·호수 추첨 참가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리세대의 경우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분리세대 소명 완료시까지 계약서는 미불출되며, 추후 분리세대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서류접수 대상" 선정은 정당당첨자의 서류검수 및 계약의사를 통한 예상 잔여 세대를 토대로 선정하므로 타입별 "우선 서류접수 대상" 세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 2020.12.02(수) ~ 12.04(금), 10:00 ~ 16:00

■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 기간 : 2020.12.08(화)

※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1. 추첨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 일시 : 2020.12.08(화)

■ 추첨 및 계약장소: 과천 르센토 데시앙 견본주택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산27-1)

추첨 시간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타입	특별공급 84A	특별공급 84B	일반공급 84A 일반공급 84B	일반공급 99A	일반공급 99B	일반공급 107A

※ 추첨 시간 정각에 동·호수 추첨 행사가 바로 진행되며 행사중에는 입장이 절대 불가하오니, 추첨시간 이전 입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입장시간을 엄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입금 안내(예비입주자 추첨 후 즉시 입금)

구분	아파트 공급 계약안내	발코니 및 추가옵션 계약안내
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계좌	1006-701-539904	1006-301-539906
예금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계약금	공급 금액의 20%	1,500,000원
입금방법	입금자명 : [동][호수][계약자명] 예시) 101동501호 홍길동 입금시 (1010501홍길동)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동·호수의 분양대금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계약시 제출서류 안내

구분	기간	비고
일반 (공동)	본인 계약시	<input type="checkbox"/>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input type="checkbox"/> 추가개별통지서류(부적격 소명 등)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인감도장 <input type="checkbox"/> 계약금 입금증
	제 3자 대리인 계약시 (추가 서류)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구비서류 일체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인감도장 <input type="checkbox"/>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부 - 용도 : 아파트 계약용(1부), 아파트 계약 위임용(1부)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불가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4. 유의사항

■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신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최대 10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당첨자께서는 공급질서 교란 예방을 위하여 동호수 추첨 이후 즉시 계약금 (분양대금 금액의 20%,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계약금 150만원)을 완납 해야하므로, 계약금 입금에 지장 없도록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완료 전까지 견본주택 퇴장 및 은행방문이 불가하므로 인터넷뱅킹(폰뱅킹), 대리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사전 준비(견본주택 내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동 서류	서약서	○		-	- 건분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건분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인서		○	-	-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분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일반공급 추첨제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부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속	- 이혼, 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속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계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협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 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제출(2019.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 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상세"발급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확인 필요 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 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 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 자)		- 입양의 경우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전년도(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5,554,984 ~6,665,980	6,226,343 ~7,471,610	6,938,355 ~8,326,025	7,594,084 ~9,112,900	8,249,813 ~9,899,774	8,905,542 ~10,686,649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 ~130%이하	5,554,984 ~7,221,478	6,226,343 ~8,094,245	6,938,355 ~9,019,860	7,594,084 ~9,872,308	8,249,813 ~10,724,756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 ~7,221,478	7,471,611 ~8,094,245	8,326,026 ~9,019,860	9,112,901 ~9,987,308	9,899,775 ~10,724,756	10,686,650 ~11,577,203
		6억초과 9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 ~140%이하	6,665,981 ~7,776,976	7,471,611 ~8,716,879	8,326,026 ~9,713,696	9,112,901 ~10,631,716	9,899,775 ~11,549,737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자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반드시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상기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701호(2020.9.29)]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건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건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지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속서		○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본증명서		○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확인 필요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자녀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및 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서 추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제출 서류

구분	해당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주요 확인 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서약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견본주택에 비치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당첨자 전원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및 미제출 사유서	○		-	-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에 비치 - 항목별 필요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 포함"로 발급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①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②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직계존·비속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서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성년자 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2019.01.01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요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발급처 : 해당 직장 / 세무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본인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납부내역증명 포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성년자 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 성년자 인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청약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번호, 세대수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소득기준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자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반드시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경분주택에 비치) ②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9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		

※ 해당직장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직인 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접수 불가합니다.

※ 상기 서류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0.10.22.(포함) 이후 발급 분에 한합니다.

※ 상기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운용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703호(2020.9.29)]에 따릅니다.